

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검 토 보 고

1. 의안제출

- 제출일자 : 2017. 5. 31.(수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예비심사 : 2017. 6. 14.(수)
- 회부일 : 2017. 6. 16.(금)
- 심사일 : 2017. 6. 19.(월)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성 총괄

(단위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(가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나)
	계(나)=(다)-(라)	조성액(다)	사용액(라)	
573,171,569	-23,626,910	1,105,593,890	1,129,220,800	549,544,659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13조

5. 검토의견 : 없음

관 련 법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(약칭: 지방기금법)

[시행 2017.1.1.] [법률 제13428호, 2015.7.24., 일부개정] 행정자치부(재정정책과)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

[시행 2016.12.30.] [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836호, 2016.12.30., 일부개정] 중구 (안전총괄과)

제13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조성계획
2. 기금의 사용계획
3. 기금의 운용방법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